

제 18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
제1차 본회의, 2011.3.25(금)10:00

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전 문 위 원

「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」 검토보고

1. 제 안 자 : 배영백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- 경제적 위기로 빈곤, 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소득과 취업의 불균형으로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,
-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,
-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” 를 구성 운영함(안 제3조)
-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,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한 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(안 제4조)
-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함(안 제5조)
- 사회적기업 등에 부지구입비, 시설비를 지원하거나 국·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고, 불용품을 무상 양여할 수 있음(안 제6조)

-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, 기술, 세무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(안 제7조, 안 제8조)
-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조치를 강구함(안 제9조)
-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고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민간기업·단체 등의 참여를 확충하며 사회적기업의 홍보방안을 강구함(안 제10조~12조)

4. 관계법령

-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, 제7조, 제8조
-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, 제3조, 제8조, 제9조

5. 검토의견

- 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

경제위기로 빈곤, 소외계층이 급증하면서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완화하고,

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한 것임.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조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”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후,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5조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촉진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·시설비 등을 지원·융자하거나, 국·공유지 임대와 불용물품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7조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, 법률, 기술, 세무, 노무,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,
-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안 제9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와 판로 개척을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고,
-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고령군 사무의 민간 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고,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민간기업·단체 등의 참여를 확충하며,
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홍보 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음.

○ 내용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

-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「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」의 규정에 적합하고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본 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조치와 취약계층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.

관계법령 발췌

[사회적기업 육성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사회적기업"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.
2. "취약계층"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,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3. "사회서비스"란 교육, 보건, 사회복지,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.
4. "연계기업"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,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·물적·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.

제7조(사회적기업의 인증)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.

제8조(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)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「민법」에 따른 법인·조합,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는 것
2.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

3.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.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4. 서비스 수혜자,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
 5.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
 6.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
 7.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(「상법」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)
 8.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.

[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]

제2조(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)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(이하 "취약계층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
2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
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4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
5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「경력단절

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

6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7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

8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

9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
10.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

1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
나.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

12.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(이하 "정책심의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

제3조(사회서비스의 종류) 법 제2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
1. 보육 서비스

2. 예술·관광 및 운동 서비스

3.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

4.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

5.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

6.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

7. 「직업안정법」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

8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

제8조(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)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"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.

1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

2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
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

5.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[전문개정 2010.12.9]

제9조(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)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.

1.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:

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(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) 이상일 것

2.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: 해당

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(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) 이상일 것

3.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: 지역(고용노동부

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
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(이하 "지역취약계층"이라 한다)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

4.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: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(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) 이상일 것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.

[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고령자"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.
2. "준고령자"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.

[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]

제2조(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) ①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

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.

[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장애인"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[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]

제3조(장애인의 기준)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